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㉾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[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[6574] 보험급여팀장 백영기[6581] 팀원 박수연[6548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2845호

시행일자 2018. 3. 2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.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33호(2018.2.27.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?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?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2호, 2018.1. 24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다 음 -

[주요내용]

○ 자-49 추간판제거술[척추후궁절제술 포함]
○ 자-49-1 척추후궁절제술
○ 자-52 쇄골골절고정술란
○ 질병군 급여 목록·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
○ 질병군 요양기관종별 점수 및 금액표

[시행일]

2018.3.1.(목)부터

* 자-52 쇄골골절고정술란의 주항의 정정사항은 2018.1.1.부터

붙 임 : 복지부 개정안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